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1년 6월 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도청을 찾는 민원인·방문객의 공통적 애로사항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관제시스템 도입 및 유료화에 따른 주차요금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
- 주차장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- 징수된 요금 관리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이번에 제정하는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○ 주차장 운영시간

- 연중 24시간 운영, 유료운영시간 : 09시~20시.

○ 주차요금

- 기본 30분 : 500원
- 매10분마다 : 200원씩 추가 징수
- 1일 주차요금 : 8,000원

○ 주차요금 감면

- 민원방문 : 60분까지 무료(민원방문 확인증)
- 80% 감면 :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고영제 후유의증 환자
- 50% 감면 : 경형 자동차(1000cc미만)

금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1부. 끝.